

특약 개정 대비표

1. 약관명: 『미래행복통장』 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 내용 : 급여인정 기준 확대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 1조 ~ 제 10조 <생 략></p> <p>제 11조 우대금리 <생 략></p> <p><u>(주1)급여이체 인정기준 :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하거나,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(급여성 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등)</u></p> <p>제 12조 ~ 제 14조 <생 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생 략> <u><신 설></u></p>	<p>제 1조 ~ 제 10조 <좌 동></p> <p>제 11조 우대금리 <좌 동></p> <p><u>(주1)급여입금실적 인정기준</u></p> <p>① <u>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</p> <p>② <u>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</p> <p>③ <u>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</u></p> <p>※<u>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 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</u></p> <p>※<u>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</u></p> <p>제 12조 ~ 제 14조 <좌 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좌 동></p> <p><u>3. 이 특약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</u></p>	<p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급여인정 기준확대</p> <p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추가</p>